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상의 동일 규율 등〉

■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29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대리상과 동일한 권한 부여	3
2. 고지의무 위반 인정 요건을 서면질의사항으로 제한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31.
3. 회 부 일 : 2024. 11.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나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자가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46조의2 및 제651조).

Ⅲ. 검토의견

1.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대리상과 동일한 권한 부여

- 개정안은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상과 동일하게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 교부,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수령,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6조의2).

현행	개정안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u>보험대리상</u> 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u>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는---</u>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u>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u>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 --- <u>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의</u> ----- ----. ----- ----- -----.
③ <u>보험대리상이</u>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③ <u>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u> <u>가</u>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보험편에서는 보험자의 보조자로서 보험대리상과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현행 제646조의2).

○ 보험대리상은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제87조)¹⁾을 영업으로 하는 자(제646조의2제1항)로서, 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제1호), ②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1) 「상법」 제87조(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교부할 수 있는 권한(제2호), ③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제3호), ④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제4호)이 인정됨.

○ 보험대리상은 본인인 보험자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대리상인 체약대리상과,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 없이 거래의 성립을 위해 중개하는 대리상인 중개대리상으로 나눌 수 있고, 양자의 구분은 보험자와 보험대리상간에 체결되는 대리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좌우됨.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대리상의 구분을 전제로 보험자는 체약대리상을 전제로 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개대리상을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음(제646조의2제2항).²⁾

- 먼저, 보험대리상이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한, 즉 제646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모두 수여받는 경우, 해당 보험대리상은 ‘체약대리상’이 됨.
- 그리고 보험자가 보험대리상에 대해 ① 보험계약자로부터의 보험료 수령권(제1호) 및 ②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증권교부권(제2호)만

2) 계약기간이 단기이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체약대리상이 많고, 인보험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장기일 뿐만 아니라 체결 과정에서 신체검사 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체결권을 본인 즉 보험자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어 중개대리상이 주로 이용된다는 강학상 논의가 있으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구별없이 계약체결 대리권 전부를 보험대리상에게 위임하는 대리상 계약을 보험자가 체결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21. p.122)

수여하는 경우 해당 보험대리상은 ‘중개대리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보험설계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됨. 다만, 이와 같은 권한 제한은 보험자와 보험대리상 사이의 대리상 계약에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제646조의2제2항).

- 또한,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①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제1호, 단,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로 한정) 및 ②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제2호)이 인정됨(제646조의2제3항).

□ 한편,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의 보조자 중 하나로 보험설계사를 규정하고 있음.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하며(「보험업법」 제2조제9호)³⁾⁴⁾, 「상법」

3)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한편, 「보험업법」에서는 「상법」에서 사용하는 “보험자” 및 “보험대리상”이라는 용어 대신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지시 대상에 다소 차

제646조의2제3항에서 언급하는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거 판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라는 사실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보험계약 체결권이나 고지 및 통지 수령권이 인정되지 않음.⁵⁾

<표> 「상법」상 보험대리상과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보험설계사)의 권한 비교

구 분	보험대리상		보험설계사
	계약대리상	중개대리상	
보험료수령권	○	○	○
보험증권교부권	○	○	○
계약 관련 의사표시수령권	○	X	X
계약 관련 의사표시권	○	X	X
권한제한사실에 대한 선의자 보호	○		X

-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대리상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상당수가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 실무를 반영하고 보험계약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상법」상 보험대리상은 계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라는 점에서 완전한 계약체결권을 수여받은 계약대리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5)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취지로, 보험계약자의 보호 및 편익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실무상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대면하는 보험회사 측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거의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설계사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보험대리상 중에서 제646조의2제2항에 따라 권한이 제한되는 중개대리상의 경우, 제646조의2제3항에 따라 규율되는 보험설계사와 그 권한이 사실상 동일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중개대리상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선의의 보험계약자는 보호받는 반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 선의의 보험계약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개정안은 안 제646조의2제1항에서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동등하게 규율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보험자가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도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함. 이를 통하여 보험설계사와 계약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안 제464조제3항에서 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가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법적 대상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심사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상법」은 모든 상거래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점 및 현행법이 보험설계사라는 명시적인 표현 대신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고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설계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이 법이 아닌 「보험업법」 정의 규정의 개정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셋째, 개정안과 같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대리상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상법」과 「보험업법」상 규정의 체계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심사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⁶⁾

6) 손해보험협회의 의견으로, 해당 협회는 이외에도 보험설계사의 위험인수 및 보험계약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대리상과 동일한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고지의무 이행 여부 또는 계약 관련 의사표시의 누락이나 착오 전달 등

□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보험계약자와 통모행위를 하거나 보험료를 낮춰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부실고지를 할 유인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보험설계사의 책임이 강화되기 보다는 보험회사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음.
- 둘째,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실행위만 수행할 뿐 계약체결 대리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상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권한만 개정하는 것은 법률 상호간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그 권한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도 어색할 수 있음.

이 발생할 가능성과 보험자·보험계약자 간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함.

2. 고지의무 위반 인정 요건을 서면질의사항으로 제한

- 개정안은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는 고지의무 위반의 객관적 요건을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나 부실고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51조 및 현행 제651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第651條(告知義務違反으로 인한 契約解止) 保險契約當時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重要な 事項을 告知하지 아니하거나 不實의 告知를 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1月內에, 契約을 締結한 날로부터 3年內에 限하여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者가 契約當時에 그 事實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第651條(告知義務違反으로 인한 契約解止) ① ----- ----- ----- <u>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u> ----- ----- ----- ----- ----- ----- ----- ----- -----. ② 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u>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u>

현행	개정안
第651條의2(書面에 의한 質問의效力) 保險者가 書面으로 質問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推定한다.	<삭제>

- 현행법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하면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51조).
-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측에 편재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보험자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서의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고 보험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 여부와 보험료 등 계약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함.
- 대법원은 고지의무의 대상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고지 대상이 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부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⁷⁾.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나 부실고지, ② 주관적 요건으로서 불고지나 부실고지에 관한 고의 또는 중과실⁸⁾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인 사항을 의미함⁹⁾.

- 중요한 사항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보험의 기술에 정통한

7)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보험금

8)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38670 판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54648 판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

9)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80309 판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상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인 사항을 가리킨다.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되고¹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됨(제651조의2).

□ 개정안은 고지의무 위반의 객관적 요건을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나 부실고지로 제한함으로써 고지의무를 보험계약자 측에서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자발적 의무에서 보험자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면 되는 수동적 의무로 전환하려는 취지로, 보험계약의 실무와 보험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회가 복잡다변화됨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하여야 할 사항이 점차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어 보험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 등이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하여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자에게 보험 전반에 관한 지식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고지의무의 부과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실무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대리상 등 포함)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계약체결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 과정에서 질문사항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고지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10)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험의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것으로 보임.

- 특히, 개정안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시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의 해지·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자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엄격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11)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인정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위험 관련 모든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를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정보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 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해당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제19조(설명 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보장성 상품
-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4) 위험보장의 범위
-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설명 의무)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험보장 기간 2. 계약의 해지·해제 3. 보험료의 감액 청구
4.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위험이 부정확하게 측정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¹²⁾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수동화하여 보험계약자가 추후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계약이 해지될 우려를 경감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자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만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보험자가 추상적·포괄적 질문을 질문표에 포함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까지 응답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자의 추상적·포괄적 질문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고지의무 이행대상을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전화·인터넷 등의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고려하여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 문서에 의한 질의를 포함하는 방안도 심사시 검토될 필요가 있음.

12) 개정안과 관련하여,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회사가 표준 사업방법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질문표 작성에 사실상 제약이 있고, 고지의무를 수동화하려면 부실위험 인수 및 역선택 방지를 위하여 질문표 작성의 자율성 보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55